# 위탁자산운용규정

2006. 11. 17 제 정 2014. 5. 28 개 정(1) 개 정(2) 2014. 9. 2 2014. 12. 11 개 정(3) 개 정(4) 2015. 06. 09 정(5) 2015. 8. 20 개 정(6) 2015. 9. 16 개 정(7) 개 2016. 2. 29 개 정(8) 2016. 9. 1 개 정(9) 2019. 2. 25 정(10) 2020. 1.16 개 정(11) 개 2020. 10. 21 2023. 8. 2 개 정(12) 개 정(13) 2024. 6.25

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한국투자공사법」(이하 "공사법") 제2조에 따라 한국투 자공사(이하 "공사")에 위탁된 자산(이하 "위탁자산")을 운용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위탁자산을 운용·관리함에 있어 공사법과 동법 시행령, 「한국투자공사 정관」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②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위탁자산운용세칙」으로 정한다.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의 내규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위탁기관"은 공사법 제2조에 의거 자산의 운용을 공사에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.

- 2. "전통자산"은 채권, 주식 등과 같이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동성 있는 금융투자상품, 현금성 자산 및 금융기관 예치금 등을 말한다.
- 3. "대체자산" 은 사모주식, 부동산, 인프라, 헤지펀드 등 전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.
- 4. "전략적 투자"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공동으로 투자하는 등의 전략적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투자공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자산과 별 도의 전략적 판단으로 집행되는 투자를 말한다
- 5. "직접운용" 또는 "직접투자"는 공사가 위탁운용사에 외부 위탁하지 않고 공사의 판단으로 자산을 직접 운용 또는 투자 하는 것을 말한다.
- 6. "간접운용" 또는 "간접투자"는 공사가 외부 위탁운용사에게 자산을 위탁하여 운용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.
- 7. "전략적 자산배분(Strategic Asset Allocation)" 은 장기 시계의 금융·경제 전망 등을 바탕으로 공사의 투자목적과 투자전략을 포괄하여 투자자산군을 분류하고 자산구성 비중을 정하는 정책적 의사결정을 말한다.
- 8. "전략적 비중조정(Strategic Tilting)" 은 중기 시계의 금융·경제 전망을 반영 하거나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자산구성 비중을 조정하는 투자의사 결정을 말한다.
- 9. "전술적 자산배분(Tactical Asset Allocation)" 은 단기 금융·경제 전망 등에 기반하여 자산군 비중조정 등을 수행하는 투자의사 결정을 말한다.
- 10. "공동투자(Co-Investment)" 란 공사가 간접투자 계약을 체결한 대체자산위탁 운용사가 제안하는 투자(안)에 공사의 판단으로 투자하는 것으로, 공사가 기투자한 펀드 및 동일전략의 직전 또는 직후 펀드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.
- 11. "전통자산위탁운용사"는 공사가 전통자산 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.
- 12. "대체자산위탁운용사"는 공사가 대체자산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 용회사 등을 말한다.
- 13. "전략적투자자산위탁운용사"는 공사가 전략적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 등을 말한다.
-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기타 법령, 관련 제규정 및 시장관행의 순에 따른다.
- 제4조(임직원의 주의의무) ①임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를 위

한 노력을 다하고, 제반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.

### 제2장 운용조직 및 투자의사결정 체계

- 제5조(이사회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위원회에 부의되는 투자관련 사항을 심의·의결하다.
  - 1.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
  - 2.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
  - 3. 연간투자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  - 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투자관련 사항
- 제6조(투자위원회) ①공사는 위탁자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 의결하기 위하여 투자위원회(Investment Committee, IC)를 설치·운영한다.
  - ②투자위원회는 사장, 투자운용부문장, 투자관리부문장, 경영관리부문장, 투자전략담당본부장, 전통자산운용담당본부장, 대체자산운용담당본부장으로 구성하고 사장이 위원장이 된다. 위원장 부재 시에는 「한국투자공사 정관」제24조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  - ③감사 및 준법감시인은 투자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 표결권은 없다. 또한 안건 관련부서 임직원이 배석할 수 있다.
  - ④투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다만, 본 규정 및 「위탁자산운용세칙」에 의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 - 1. 전통자산위탁운용사 선정 및 위탁금액 결정
  - 2. 대체자산 직접투자, 간접투자, 공동투자, 처분 및 해지에 관한 사항
  - 3. 전략적 투자 대상 자산의 투자, 처분 및 해지에 관한 사항
  - 4. 전통자산의 전략적 비중조정 (Strategic Tilting)에 관한 사항
  - 5. 대체자산 투자운용 목적으로 향후 투자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한 투자의사결정의 일정기준 내 위임 여부
  - 6. 기타 위원장이 투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투자관련 사항 ⑤투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긴급하거나 토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결의에의할 수 있다.
  - ⑥투자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당해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⑦투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위탁자산운용세칙」에서 정한다.

제7조(투자운용부문장)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한다.

- 1. 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- 2. 기타 운영위원회, 이사회, 투자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투자관련 사항
- 제8조(투자실무위원회) ①공사는 이사회 및 투자위원회의 투자 관련 심의·의결 안건을 사전 심의하거나 사장 또는 투자운용부문장의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운용부문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실무위원회(Investment Working Committee, IWC)를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위원장은 필요시 투자전략담당본부장, 전통자산운용담당본부장 또는 대체자산운용담당본부장에게 위원장을 위임할 수 있다.
- ②전통자산과 관련된 투자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- 1. 투자전략담당본부장 및 소속부서장
- 2. 전통자산운용담당본부장 및 소속부서장
- 3.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장
- 4. 준법지원 및 법무 담당부서장
- ③대체자산과 관련된 투자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단, 헤지펀드의 경우 간접운용을 수행하는 전통자산운용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- 1. 대체자산운용담당본부장 및 소속부서장
- 2.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장
- 3. 준법지원 및 법무 담당부서장
- 4. 투자기획담당부서장
- ④전략적자산배분, 연간 투자운용계획 수립 등 전체 자산군을 포괄하는 안건과 관련된 투자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본 조의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.
- ⑤투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실무위원회 개최시 관련 임직원을 위원으로 추가 선정하거나 출석·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⑥투자위원회 위원, 감사 및 준법감시인은 투자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안건 관련부서 임직원이 배석할 수 있다.
- ⑦투자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이사회에 부의되는 투자관련 심의ㆍ의결 사항. 단,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외
- 2. 투자위원회에 부의되는 심의 · 의결 사항
- 3. 기타 위원장이 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- 제9조(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) ①공사는 이사회 및 투자위원회의 전략적 투자 관련 심의·의결 안건을 사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투자운용부문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(Strategic Investment Working Committee, SIWC)를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위원장은 필요시 전략적투자담당본부장에게 위원장을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  - 1.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장
  - 2. 법무 담당부서장
  - 3. 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하는 투자운용부문 소속 본부장/부서 장 1인
  - 4. 외부 전문위원 3인
  - ③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조 제2항의 실무위원회 개최시 관련 임직 원을 출석·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 - ④투자위원회 위원, 감사 및 준법감시인은 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 언할 수 있으며, 안건 관련부서 임직원이 배석할 수 있다.
  - ⑤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 - 1. 투자위원회에 부의되는 심의 · 의결 사항
  - 2. 기타 위원장이 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  - ⑥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긴급하거나 토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.
  - ⑦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위탁자산운용세칙」에서 정한다.
- 제10조(투자운용부서) ①투자운용담당부서는 시장의 정보를 수집, 분석하여 위임 된 권한내에서 본인의 판단하에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대외 의사표시를 행함 으로써 거래를 실행하다.
  - ②투자운용담당부서는 적절한 사후관리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투자실행 내역을 운용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, 리스크관리담당부서 및 운용지원담당부서의 업무협조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
#### 제3장 자산운용의 원칙 및 절차

- **제11조(자산운용의 기본원칙)** 공사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산운용 원칙하에 지속 가능한 수익증대를 추구한다.
- 제12조(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) 공사법 제31조에 따른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내에서 위탁자산을 운용하다.
- 제13조(연간투자운용계획의 수립) ①공사는 당해년도의 연간투자운용계획을 수립 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  - ②제1항에 따른 연간투자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
  - 2. 당해년도 투자운용전략
  - 3. 자산군별 및 자산종류별 배분계획
  - 4.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 벤치마크
  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투자운용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받아 시행한다. 또한, 연중 그 계획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받아 시행하도록 한다.
- 제14조(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방법) ①포트폴리오는 통화별, 지역별 투자환경 및 환율변동에 대한 종합적 전망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  - ②공사의 직접운용, 간접운용, 공동투자 등 운용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은 포트폴리오 구성차원에서 인력, 운용기법의 숙련도,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한다.
- 제15조(외부자문사) ①공사는 외부자문사를 선정·고용하여 투자자문, 재무자문, 회계 및 세무자문, 실물자산위탁관리, 부동산 실사자문, 기타 전문컨설팅 및 중개업과 같은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공사는 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승인으로 외부자문사 후보군을 선정하고, 선정된 외부자문사 후보군 내에서 사장의 승인으로 외부자문사를 고용한다. 단, 특정인의 기술, 용역능력 또는 특정한 여건, 품질 및 효율 등을 감안 시 경쟁할수 없거나 경쟁하는 것이 불리한 분야에서, 또는 시급한 사안에 대해 고용하는 경우 후보군 선정절차를 생략하고 사장의 승인으로 외부자문사를 고용할 수 있다.
  - ③외부자문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「위탁자산운용세칙」에서 정한다.
- 제16조(운용관련 비용지급) 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비용은 관련계약 및 국제금융관례에 따라 지급한다.

제17조(위탁자산의 관리) 공사는 위탁자산의 보관 및 관리를 지정된 수탁은행에 위탁하여야 한다. 단, 대체자산 간접투자 등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전통자산의 투자운용

- 제18조(운용원칙) 전통자산은 위탁자가 허용한 위험범위 내에서 운용기준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운용한다.
- 제19조(운용방법) ①전통자산은 연간투자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전략적 비중조정 (Strategic Tilting), 전술적 자산배분(Tactical Asset Allocation) 및 자산유형별 운용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.
  - ②전략적 비중조정은 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위원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.
  - ③공사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전통자산의 운용업무를 전통자산위탁운용사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, 전통자산위탁운용사는 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위원회의 승인으로 선정한다.
  - ④전통자산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세부 절차는 「위탁자산운용세칙」에서 정한다.
- 제20조(투자대상) 전통자산의 투자대상은 주식, 채권, 원자재지수 등 위탁기관과 체결한 자산위탁계약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.
- 제21조(간접운용 자금 회수) 공사는 위탁기관의 자금회수, 공사 투자전략의 변경 등의 사유로 간접운용하는 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투자운용부문장 승인으로 회수할 수 있다.
- 제22조(전통자산의 거래상대방) 공사는 「거래상대방관리 업무지침」을 통해 선정된 적격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허용된 한도내에서 거래하며, 세부사항은 「위탁자산운용세칙」에 따른다.

### 제5장 대체자산의 투자운용

- 제23조(운용원칙) 대체자산 투자운용은 자산유형, 지역, 전략 및 산업 등으로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인 투자수익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한다.
- 제24조(운용방법) ①대체자산은 연간투자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직접투자, 간접투자, 공동투자 등의 형태로 운용한다.
  - ②대체투자운용담당부서는 관련 법규 및 위탁계약서에 따라 투자위원회의 승인으로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.
  - ③대체투자운용담당부서는 대체자산 투자운용 목적으로 전통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대체자산 직접 또는 공동투자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.
  - ④대체자산 직접투자, 간접투자 및 공동투자에 대한 세부 절차는 「위탁자산운용 세칙」에서 정하며, 헤지펀드의 경우 「위탁자산운용세칙」의 전통자산위탁운용사 선정절차를 준용한다.
- 제25조(투자대상) 대체자산의 투자대상은 사모주식, 부동산, 인프라, 헤지펀드 등 위탁기관과 체결한 자산위탁계약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.
- 제26조(대체자산의 처분 및 해지) ① 공사는 헤지펀드를 제외한 대체자산의 투자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었거나, 투자전략의 변화, 계약 위반, 수익률 부진, 경영상 의 중대한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 자위원회의 승인으로 대체투자운용 자산의 처분,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단, 헤지펀드의 경우 자금회수에 관해 제21조를 준용하며,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「위탁자산운용세칙」의 전통자산위탁운용사 계약에 관한 절차를 준용 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투자조건에 의하여 공사가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경우 대체자산의 해지내역을 사장에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상기 절차를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운용부문장 또는 대체자산운용담당본부장이 최종 승인한 대체자산 투자운용의 경우에는 동 승인권자가 자산의 처분, 계약 해지 등을 승인하고 담당부서가 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제27조(직접투자회사의 이사선임 및 책임) ①사장은 공사가 투자한 회사(본 조에서 이하 "투자회사")의 성격 및 후보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를 선정한다. ②공사의 임직원이 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, 공사는 투자회사 임원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주주, 채권자 등으로부터의 소송

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

- ③투자회사 이사는 투자회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장에게 보고한다.
- 1. 이사회 안건 및 결의내역
- 2. 투자회사의 경영, 재무, 사업방향 등 중대 변화 및 실적발표
- 3. 관련 산업동향 등 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정보

#### 제6장 전략적 투자자산의 투자운용

- 제28조(운용원칙) 전략적 투자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공동으로 투자하는 등의 전략적 목적 달성 및 운용기준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.
- 제29조(운용방법) ①전략적 투자는 연간투자운용계획을 바탕으로 한국투자공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자산과 별도의 전략적 판단으로 운용한다.
  - ②전략적투자운용담당부서는 관련 법규 및 위탁계약서에 따라 투자위원회의 승인으로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.
  - ③전략적투자운용담당부서는 전략적 투자 목적으로 전통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전략적 투자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.
  - ④전략적 투자에 대한 세부 절차는 「위탁자산운용세칙」에서 정한다.
- 제30조(투자대상) 전략적 투자의 투자대상은 자산위탁계약서에 명시된 전통자산과 대체자산을 모두 포함한다.
- 제31조(전략적 투자자산의 처분 및 해지) ① 공사는 전략적 투자자산의 투자목표 수익률이 달성되었거나, 투자전략의 변화, 계약 위반, 수익률 부진, 경영상의 중 대한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투자위원회의 승인으로 전략적 투자자산의 처분,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조건에 의하여 공사가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경우 담당부서는 전략적 투자자산의 처분 및 해지내역을 사장에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상기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.

- 제32조(전략적 투자 회사의 이사선임 및 책임) ①전략적 투자 회사의 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, 사장은 공사가 투자한 회사(본 조에서 이하 "투자회사")의 성격 및 후보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를 선정한다.
  - ②공사의 임직원이 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, 공사는 투자회사 임원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주주, 채권자 등으로부터의 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을 부담한다. 다만, 그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
  - ③투자회사 이사는 투자회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장에게 보고한다.
  - 1. 이사회 안건 및 결의내역
  - 2. 투자회사의 경영, 재무, 사업방향 등 중대 변화 및 실적발표
  - 3. 관련 산업동향 등 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정보

#### 제7장 의결권 행사

- 제33조(의결권행사) ①공사의 위탁자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은 위탁 기관이 위임한 내용에 따라 신중하고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.
  - ②공사는 투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한다. 단, 보유지분이 일정비율 이하이거나 특수목적법인(SPC)에 대한 의결권은 투자운용부문장 및 외 부운용사, 주주권리 전문기관 등 외부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③공사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의결권 행사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 - 1. 공사의 보유주식 지분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
  - 2. 벤치마크를 일정한도 내에서 추종하는 것이 투자목적인 경우
  - 3. 특수목적법인(SPC)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인 경우
  - ④의결권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위탁자산운용세칙」에서 정한다.

#### 제8장 기타

제34조(증권의 대여) 공사는 위탁기관의 위임을 받아 증권대여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, 증권대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절하게

관리하여야 한다.

제35조(공고) 공사는 공사법 제36조(공고) 및 제37조(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), 「한국투자공사 정관」제42조(공고의 방법) 에 따라 중장기 투자정책 및 위탁자산 운용실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### 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정폐지) 본 규정의 개정으로 기존 「투자전문위원회 규정」,「대체투자운 용 규정」,「외부자산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,「한국투자공사 의결 권 행사규정」「헤지펀드 투자운용세칙」「대체투자 외부자문사 선정 및 관리세칙」은 폐지한다.

# 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6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7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(8)

제1조(시행일)본 규정은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내규의 개정) 직무전결규정의 별표 중 투자관련계약 (2) 투자운용계약 체결 및 변경 일부(투자운용본부장이 의사결정하는 경우), 전통자산 간접운용 (3), 대체자산 대체투자운용 (5) 일부(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)는 본 규정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투자운용본부장으로 개정하고, 대체자산 대체투자운용 (9)는 본 규정 및 세칙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사장으로 개정한다.

# 부 칙(9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내규의 개정) 직무전결규정의 별표는 본 규정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한다.

# 부 칙(10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11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내규의 개정) 직무전결규정의 별표는 본 규정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한다.

### 부 칙(12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3년 8월 2일 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(13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4년 6월 25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내규의 개정) 직무전결규정의 별표는 본 규정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한다.